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52
----------	-------

발의연월일 : 2018. 6. 27.

발의자 : 박덕흠 · 김명연 · 홍철호

김성원 · 경대수 · 김성찬

원유철 · 박성중 · 김승희

윤종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설치와 해체 등 건설기계장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건설기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과 사고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설기계 장비의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를 수급조절 시 고려할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설기계수급계획의 변경 및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기계 설치·해체 및 운전 등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
5.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3제3항 중 “한다”를 “하되, 수급조절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օ)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p><u>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u>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p>
<p><u>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② (생략)</u></p>	<p><u>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u></p>
<p><u>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u></p>	<p><u>③-----</u> ----- ----- ----- ----- ----- ----- ----- ----- ----- ----- ----- ----- ----- ----- ----- <u>--하되, 수급조절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을 포함한다.</u></p>
<p><u>④ (생략)</u></p>	<p><u>④ (현행과 같음)</u></p>